

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2024. 12. 17.

관계기관합동

목 차

I. 불법사금융 실태 및 문제점	1
II. 그간의 성과 및 한계	2
III.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	3
1.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·차단 효율화	4
2. 피해 발생시 피해자 보호 강화	8
3.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금 확대	10
4. 불법사금융 단속·수사 강화	13
5.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	15
IV. 향후 계획	16
[참고1] 불법사채 솔루션업체 현황 및 대응방향	18
[참고2] 영국 「온라인안전법(Online Safety Act 2023)」 주요내용	19
[참고3]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진행경과	20
[참고4] 불법사금융업자 주요 검거사례	21

I. 불법사금융 실태 및 문제점

- 생활여건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불법 광고, 대포폰 활용 등 사기적 영업수법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 발생
 - '24.1~11월중 금감원 「불사금 피해신고센터」에 접수된 피해신고·상담 건수*는 13,994건으로 전년동기(12,520건) 대비 11.8%(1,474건) 증가
 - * 피해신고·상담(건): ('21) 9,918 → ('22) 10,913 → ('23) 13,751 → ('24.1~11) 13,994
 - '24.1~11월중 경찰의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*도 1,809건으로 증가 추세
 - * 검거 건수(건): ('22) 1,179 → ('23) 1,404 → ('24.1~11월) 1,809
- 생활자금 등 긴급한 생계형 자금수요가 계속 존재*하는 가운데,
 - * 불사금 이용용도(설문조사) : 생활자금(61.6%), 사업자금(28.7%), 대출상환(21.7%) 등
불사금 이용사유(설문조사) : 돈이 급해서(40.5%), 소득·신용 상태가 나빠져서(23.4%) 등
 - 서민층의 제도권 민간금융 접근성이 약화*되고 불법사금융 이용이 지속**되는 상황
 - * 대부업(정식등록) 이용자수(만명): ('20) 138.9, ('21) 112.0, ('22) 98.9, ('23) 72.8
 - ** 불사금 이용자수(만명, 추정치) : ('20) 70.8 ('21) 76.1 ('22) 82.3 ('23) 81.6
-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행위가 확산*
 - * [불사금 인지경로 설문조사] 인터넷*(51.6%), 전단지·명함(22.0%), 문자·TM(16.5%)
※ 인터넷 세부경로 : 검색, SNS광고, 대출문의게시판, 대출비교플랫폼, 메신저 등
 - 포털사이트, SNS(오픈채팅방) 등을 통한 불법광고가 불법사금융의 주된 유입경로로 활용되고 있음
 - 최근에는 사설 채무구제사이트*(☞ 참고1),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, 개인정보 유출 등 신종 피해사례도 발생
 - * 고금리 및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불법사채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고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 추가 피해 발생
 - 범죄자가 대포폰·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렵고,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한 측면이 있어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
 - 범죄수법도 지인·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·악질적인 형태로 진화

II. 그간의 성과 및 한계

- 정부는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「범부처 TF*」 운영중('22.8월~, 총 7차례 회의 개최)
 - * 국조실(주관), 법무부, 과기정통부, 행안부, 금융위, 방통위, 국세청, 경찰청, 대검찰청, 금감원 등
- 불법사금융 '피해 예방 - 단속 및 적발 - 처벌 및 피해구제'에 이르는 쏘 단계별로 대응을 강화하였으며, 소기의 성과를 시현

< 「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」 주요 성과 >

- ① (예방) 서민들의 불사금 이용 유인을 낮출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공급 확대* 및 안내 강화 추진

* [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액(조원)] ('20)8.9 ('21)8.7 ('22)9.8 ('23)10.6

- 대부업 등록기준 상향*, 온라인 불법광고 차단** 대책 등을 마련

* 자자본 요건 상향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금융위 등록(現 자자체등록) 의무화(24.9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)

** 온라인포털(네이버, 카카오, 구글 등)의 불법대부광고 사전차단 자율규제 강화 유도

- ② (적발 및 수사) 금감원의 피해신고 접수 기능이 활성화*되고, 금감원을 통한 피해신고 건의 신속한 연계 등의 효과로 불법사금융 범죄자 검거실적 개선**

* 금감원 불사금피해신고센터 신고접수 : ('21)9,918건 → ('22)10,913건 → ('23)13,751건

** 불법사금융 범죄자 검거실적 : ('21)1,017건 → ('23)1,404건

- 수사자료 등 기반 총 344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(1,592억원 추정)

- ③ (처벌 및 피해구제) 대부업법·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구형기준을 상향('24.6월)하고, 법정 처벌형량 상향* 및 부당이익의 피해자 반환 수준을 강화**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(24.9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)

* (i)미등록 대부업 영위 : 최고 징역형 5년→10년, 최고벌금 5천만원 → 5억원

(ii)최고금리 위반 : 최고 징역형 3년→5년, 최고벌금 3천만원→2억원

** 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원리금 전체에 대한 상환의무 무효화

- 다만, 불법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요령을 잘 몰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

⇒ 분야별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특히 피해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과제를 집중 발굴할 필요

Ⅲ.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

1. 피해 예방·차단 효율화

- ① 행정청의 불법광고 사후적발 강화
- ② 플랫폼사의 불법광고 사전차단 강화
- ③ 온라인 대부중개업 관리·감독 강화
- ④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근거 마련
- 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

2. 피해 발생시 피해자보호 강화

- ①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 제고
- ② 피해신고시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
- ③ 불법·과잉추심 방지를 금융회사 내규화

→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요령 집중 홍보방안 마련

3.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환급 확대

- ① 불법취득 원리금 등 범죄이익 철저 박탈
- ② 피해자환급을 위해 범죄수익 철저 보전
- ③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
- ④ 불사금업자에 대한 세무조사·추징 강화
- ⑤ 금융·자활 지원 등 피해자 종합지원

4. 단속 수사 및 처벌 강화

- ① 불사금 전담수사팀 신설 및 특별단속
- ② 금감원 신고 건의 수사당국 신속 연계
- ③ 구형기준 및 처벌한도 상향

1

불법사금융 피해 예방·차단 효율화

- ◆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와 입법노력을 지속 강화하고,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축소

가. 행정청의 불법광고 (사후적) 차단시스템 강화

- ①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신속한 심의*를 위해 '24.1월 마련한 금융위(금감원)-방심위 간 연계시스템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차단노력을 지속**

* [금융위/금감원] 불법금융정보(광고) 차단요청 → [방심위] 심의연계시스템 통해 신속 심의 후 사이트운영자 등에 시정요구(광고삭제, 해당 광고주와의 광고계약 해지 등)

** [방심위의 불법금융정보 시정요구건수] ('22.1~10월)4,430 ('23.1~10월)4,826 ('24.1~10월)6,62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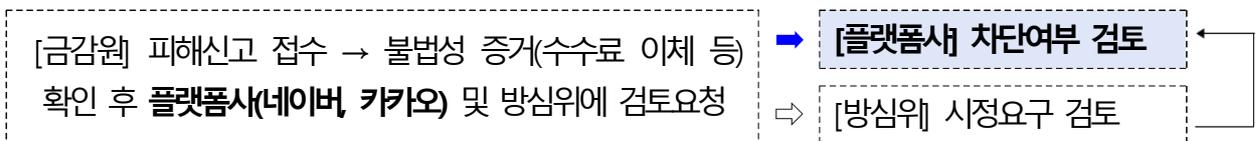
- ②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정보의 삭제를 방통위에 요청하는 경우,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

※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요청과 함께 방심위에 불법정보 심의도 요청

- ③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빙자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설 채무구제 사이트*와 같이 불법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해 민관합동 공조체계** 마련

* '불법사금융 ○○구제센터', '불법사금융 ○○대응센터' 등의 명칭으로 공익단체인 것처럼 가장,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전을 요구 → 적발시 신속차단 & 수사의뢰 조치

** [참여기관 예시] 금융위, 금감원, 방통위, 방심위, 주요 플랫폼사업자



나. 온라인플랫폼사의 불법광고 사전 차단노력 강화

-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사전적 감시·차단 강화

- 온라인 불법광고의 경우 익명성, 제작·전파 용이성 등 기술 고도화로 사후감시 중심의 대응으로는 근본적 한계

⇒ 정부와 플랫폼사의 협력에 기반한 선제적 차단 노력이 긴급

①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 선제적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*를 지속 확대하도록 유도

* 법령위반이 명백한 광고 금지 및 발견 즉시 삭제, ②광고주 정보 확인 강화 등

- 자율규제를 既도입한 플랫폼(네이버·카카오·구글)의 자율규제 운영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불법광고 노출 등 문제 발생시 보완 요청
- 자율규제 未도입 플랫폼(메타 등 해외플랫폼 중심)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도입을 지속 요청

※ 국내·외 플랫폼사 불법금융광고 자율규제 사례

① (국내) 네이버·카카오

- (광고집행前) 광고주 인가·등록 여부 및 광고주 정보 전수 검수, 광고문안 검수
- (광고집행後) 이용자 신고시 광고삭제 등 조치

② (해외) Google

- (광고집행前) 광고주 신원을 확인·공개하고 있으며, 금감원과 협력하여 투자·대출관련 광고에 대해 금융광고주로 사전 승인받은 광고주만 광고 게재 허용(24.11.7. 시행)
- * 인가받은 금융회사 등
- (광고집행後) 이용자 신고 등으로 불법금융광고 확인시 광고 삭제 조치 및 법령위반 등 심각한 위반 및 반복적 위반자에 대해 계정정지 조치

②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 정보를 게재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부과 추진

☞ '24.9월 「정보통신망법」 개정안 발의, '25.하반기중 통과 추진

※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 자율제재 약관 운영절차 주요내용 (9.23, 이상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)

- ① (약관 반영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=온라인플랫폼사)는 불법금융광고 유통 등 서비스 오용에 대한 판단기준과 서비스를 오용한 자에 대한 제재기준 등을 약관에 반영
- ③ (운영현황에 대한 당국 보고) 약관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방통위에 제출(연 1회)
- ④ (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)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 오용 제재 관련 약관 명시 의무 및 보고서 작성·제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

③ 해외 사례(예: 영국의 온라인안전법*)를 참고하여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의 사전심사 및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지속 검토(방통위)

* 영국은 「온라인안전법(Online Safety Act 2023)」을 시행, 플랫폼사업자의 불법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 (불법정보 식별, 관리 등 → 게시 방지 또는 신속 제거) ☞ 세부내용 [참고2]

다.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·감독 강화

□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, 고객 개인 정보의 제3자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

① (관계기관 합동 점검) 유관기관(금감원, 지자체, 경찰청, 금보원)이 주기적 합동점검('23년 1회, '24년 2회 실시)을 통해 불법영업 온라인 대부중개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수사의뢰 조치

- '25년 중 서울·경기 외 지역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추가 합동점검 추진

※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점검 실적

○ 금감원·지자체(서울시, 경기도)·경찰청·금융보안원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 실시(서울시 '24.1월, 경기도 '23.4월, '24.9월)

- (점검대상) 서울시·경기도 등록 대부중개사이트*

* (서울시) 5개사, (경기도) '23.4월 7개사, '24.9월 5개사

- (점검내용) 개인정보 유출,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, 허위·과장광고 등

- (점검결과) ① 개인정보 판매·유출에 대해 수사의뢰, ② 미등록대부업자 광고, 허위·과장광고 게시, 대부광고 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해 행정제재(영업정지, 과태료 등),

③ 고객정보 관리·보안 미흡 및 전산시스템 보안 취약 등에 대해 개선 지도 등

② (등록요건 강화)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자기자본 요건 도입

③ (정보보안 점검 의무화) 등록 시,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* 및 전자적 침해사고 방지** 등 정보 보호·보안 점검 의무화

*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·저장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

**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점검

④ (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)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더라도 개인정보 판매 등 대부중개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*

* 징역 5년 또는 2억원 이하 벌금(「대부업법」 개정(안))

※ ②~④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(12.3.)

라.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근거 마련 추진

- 전화번호 차단 대상 범위를 현행 ‘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번호’에서 ‘불법사금융 행위 전반(미등록대부업 영위, 불법채권추심 등)에 이용된 번호’로 확대

※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(12.3.)

마. 정책서민금융 공급 지속 확대

-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점진적으로 확대 공급

* [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액, 조원] ('20) 8.9 → ('21) 8.7 → ('22) 9.8 → ('23) 10.6

- 특히, 불법사금융 잠재 이용군인 최저 신용계층의 소액대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액생계비대출, 햇살론15,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맞춤형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및 홍보를 확대

<최저신용계층 대상 3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개요>

상품명	이용가능 대상	대출한도
햇살론 15	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인 자	20백만원* * '24년까지 한시적으로 6백만원 확대
최저신용자 특례보증	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자 중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% 이하인 자	10백만원* * 최초5백만원 + 추가5백만원
소액생계비대출	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인 자	1백만원* * 최초50만원 + 추가50만원 (특정용도자금 필요시 1백만원)

⇒ 향후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증대를 위한 **재원확보 노력*** 지속

* 은행권 출연요율을 0.035%에서 0.06%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중

- 서민층의 대출 검색시 사금융보다 정책서민금융이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, “서민금융진흥원”이 전면 노출되는 연관 검색어 종류 확대*

* 온라인플랫폼사 협의 후 연관 검색어를 26종으로 확대('24.11월)

2

피해발생시 피해자보호 강화

- ◆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,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적극 시행, 「개인채무자 보호법」 시행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

가.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 제고

- ① (선임 사각지대 보완) 전화번호가 없는 등*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

* [현행] 추심자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채무자대리인 선임 가능 → 최근 대표폰, 카카오톡 (오픈톡) 사용 등으로 채권자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선임 사각지대 발생

[개선안(예시)] 채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서를 파일로 발송 → 채무자는 오픈톡 등을 통해 선임통지서를 추심인에게 제시하고 추후 대리인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

- ② (불법연락 처벌 강화)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형벌 부과대상으로 하여 억제력 강화 검토

* 현행법(채권공정추심법)상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 → 형벌조항 신설 검토

< 참고 :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한 채무자지원 실적 >

(단위: 건)

구분	합계	채무자대리인 선임				채무해결 지원	
		소계	추심인앞 서면통지	추심인앞 알림톡발송	기타*	소송 전 구조	소송 구조
2020	919	893	118	708	67	4	22
2021	4841	4747	99	3722	926	64	30
2022	4510	4473	85	3790	598	9	28
2023	3,249	3,236	93	2,721	422	1	12
2024.1~11	2,628	2,469	20	1,886	563	0	159
누계	16,147	15,818	415	12,827	2,576	78	251

*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하였으나 채무자 의사 등에 따라 아직 추심인에게 선임통지를 하지 않은 건수

나. 피해신고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강화

- 폭행·협박이 동반된 불법추심 피해자에게는 '범죄피해자 안전조치'를 시행하고,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제도도 적극 안내*

* (경찰서 사건 접수단계 안내) 담당수사관이 ①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, ②금감원 피해신고센터, ③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 피해자 보호·지원 제도 설명 (182 상담단계 안내) 불법사금융 상담 매뉴얼 개정, 182상담원이 사건접수 방법 설명과 함께 위 3가지 피해자 지원 제도 소개

※ 182 피해자 상담매뉴얼 주요 내용

- ① 피해 발생시 신속히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람
- ② 피해자가 동의하면, 경찰이 불법사금융 피의자에게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도록 구두·서면 경고를 해드릴 수 있음
- ③ 피해신고를 하면, 경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해드릴 수 있음
- ④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☎1332),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(☎1577-1701) 등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피해구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

- (피해자 안전조치) 폭행·협박 등이 동반된 악질적 추심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시숙소 제공, 스마트워치 설치 등 신속히 지원
 - *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사건은 사건접수 즉시 안전조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방안 결정
- (가해자 경고) 피해자가 '구두·서면 경고'를 원하는 경우,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에게 구두(전화)·서면(문자) 경고

다. 불법·과잉추심 방지 의무의 금융회사 내규화

-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시행(24.10월)에 따라 1주 7회 이상 추심금지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과잉추심 방지 의무 강화 → 의무이행 내실화를 위해 금융회사별 과잉추심 방지 내부기준* 마련

*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양도, 채권추심, 추심위탁, 채무조정, 이용자보호 등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

< 「개인채무자 보호법」 주요 내용 >

- 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: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, 채권양도 등 채권 회수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 부여
→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채무조정 종료시까지 채권회수절차 중단
- ②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: 일부 대출금액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
- ③ 과도한 추심 제한 :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·수단을 활용한 추심연락 제한. 채무자는 재난, 사고 등의 경우 추심 유예* 가능
* 유예기간 : 3개월 이내 채무자-채권자간 합의한 기간(1회 연장 가능)
- ④ 채권매각 규율 강화 :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*을 미칠 경우 양도를 제한하고, 채권 양도 내부기준 마련을 의무화
* 3회 이상 양도된 채권, 채권·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

3

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확대

◆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피해자 환급 확대

① (범죄이익 박탈)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범죄이익의 철저한 박탈 추진

① **反사회적 불법대부계약 :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**

- 성착취 추심*, 인신매매, 신체상해, 폭행·협박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대부계약 등에 대해서는 원금·이자 무효화

*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의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고 추심 과정에서 이를 유폐하겠다고 협박

② **일반 불법대부계약 : 이자 무효화**

-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수취한 이자를 무효화

※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(12.3.)

② (범죄수익 보전) 범죄수익의 철저한 보전 통해 피해자환급 재산 확보

○ 모든 불법사금융 사건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(법정 최고금리 초과이자 등) 보전조치 시행중('22.9월~)

* 경찰청은 '범죄수익보전'을 불법사금융범죄 수사시 필수 활동 사안으로 지정('22.9월)

⇒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수익 보전금액이 '23년~'24년 2년 연속 상승*

* ① ('23년) '22년 대비 범죄수익 보전금액 1.4배 증가(43억 원→ 62억 원)

② ('24년 1월~10월) '23년 동기간 범죄수익 보전금액 4.6배 증가(37억 원→ 169억)

③ (피해자 환급) 지인·성착취 추심 등 反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('24.2월~)

○ 향후 대부업법 개정(反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마련) 등에 따라 무효화소송 지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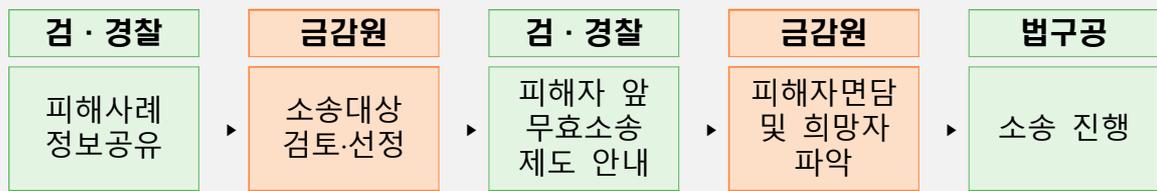
-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무효화소송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 (검찰, 경찰, 금감원, 법률구조공단, 신용회복위원회 협력)

*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법률상담 제공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여 소송대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

※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례(금감원) (☞ 참고3)

- ▶ 금감원/법률구조공단은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 9명을 대상으로 **反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중(변호사 선임비용 등)** (1차: '24.2월, 2차: '24.6월)
 - * 연 수천%의 살인적 고금리 부과, 가족·지인 추심, 나체사진 유포·협박 등 성착취 추심 등 악질적 피해 사례 대응
- ▶ 이 중 6.27일 소가 제기된 **초고금리(연 600~36,000%), 성착취 추심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1.28일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**, 선고 직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소 취하 결정
 - 무효판례가 나오지는 못했으나, 불법대부 무효화 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합의금 등을 통해 피해구제가 일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

<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절차 >



④ (불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, 체납조세 추징 강화) 국세청 자체 '불법사금융 근절 TF'를 운영('23.11월~)하여 세무조사부터 재산·체납 추적까지 엄정 대응하여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·환수

<참고 : 불법사금융 범죄 관련 세무조사, 재산·체납추적 성과('23.11.~'24.11. 국세청)>

세무조사	자금출처	체납징수	합 계
1,431억 원	32억 원	129억 원	1,592억 원

- (세무조사) 대부업·대부중개업·채권추심업 등 관련 업계 전반의 실태를 분석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해 온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한 조사진행
 - * 초고금리 이자수취, 악질적 채권 추심 행위 등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고도 세금을 신고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**확정정보전압류**하여 불법수익 은닉 사전 차단
- (자금출처) 고리이자 수입 등을 신고누락하고 고가 부동산 취득, 호화·사치 생활한 불법사채업자·일가족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
- (체납징수) 미등록대부·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체납추적조사

⑤ (피해자 종합지원) 채무자대리인 등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활 방안 등 경제적 지원, 심리치유 등 다양한 지원대책 안내

○ (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) 불사금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·감면 제도 및 정책서민금융 지원 방법 안내

※ [이용방법] ☎1397 전화상담 통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예약
 [센터별 위치 확인방법] ("서민금융진흥원" 홈페이지 접속 → "상담지원" 클릭 → "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" 클릭 → "전국 센터찾기" 클릭)

○ (고용복지플러스센터) 생계안정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, 직업훈련 및 사회복지서비스 상담

※ [이용방법] 전국 102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화상담 또는 방문예약
 [센터별 전화번호 및 위치 확인방법] ("고용복지플러스센터" 홈페이지 접속 → "전국 고용복지+센터 목록"에서 관할지역 입력 후 "검색" 클릭)

○ (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) 법률지원(법률구조공단, 법률홈닥터 등), 범죄피해구조금,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, 심리치유, 안전조치(임시숙소, 위치확인장치 지급 등), 금융·고용·복지제도 등 지원 종합 안내

※ [이용방법] ☎1577-1701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상담("법무부" 홈페이지 접속 → "법무정책 서비스" 클릭 → 좌측배너 "인권" 클릭 → "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" 클릭)

⇒ 향후 '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' 개설(25년말 예정)을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유관기관의 종합적인 법률구조 서비스*를 연계·제공 추진

* 대한법률구조공단,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, 금융감독원



4

피해발생시 단속수사 강화

◆ 특별단속 및 피해신고센터(금감원)와 수사당국·지자체 연계 강화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

- ① (특별단속) '22.11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 중으로(~'25.10.31) 검거건수·인원, 구속 인원, 범죄수익 환수 등 모든 지표가 상승
(☞ 참고4 : 불법사금융업자 주요 검거사례)

구분	검거현황			환수금액	구분	검거현황			환수 (10월까지)
	건수(건)	인원(명)	구속(명)			건수(건)	인원(명)	구속(명)	
'22년	1,179	2,073	22	43억	'23.1~11月	1,299	1,996	54	37억
'23년	1,404	2,195	67	62억	'24.1~11月	1,809	3,189	86	169억
대비	19% ↑	6% ↑	204% ↑	1.4배 ↑	대비	39% ↑	60% ↑	59% ↑	4.6배 ↑

- (중점단속 대상) 비대면·온라인 대출 등 수법 변화를 반영하여, ▲ 악질적 채권추심, ▲대포폰·통장 유통, ▲개인정보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

※ 주요 검거사례

○ 악질적 채권추심

- 불법 대부조직을 결성하고 피해자 1,535명을 상대로 29억 원 상당 미등록 대부하고, 원금 상환이 지연되면 "무릎 꿇고 빌고 있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"라고 하는 등 악질적 채권 추심을 자행한 피의자 등 76명 검거(구속3)

○ 채무자 개인정보 불법 매매 및 유통행위

- ①(정보매매) 국내 최대규모(회원 13만 명) 대부카페를 운영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업자 90명에게 제공하는 등 약 5억 원을 불법으로 대부중개한 조직 39명 검거(구속1)
- ②(정보유통) ①에서 매입한 채무자DB를 전국 대부업자에게 재유통하여 226억 원을 불법으로 대부중개하고, 직접 3,831명에게 58억 원을 대부한 조직 24명 검거(구속2)

○ 서민금융진흥원 정부지원 대출 관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

- 신용도가 낮아 1·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중개 업체로 가장하여 대출희망자 7,829명을 모집하고, 이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860억 원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8억 원 상당을 수취한 대표 등 111명 검거(구속1)

○ **(수사속도 제고)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신설** ⇒ 전국 총 297개 팀·1,599명 지정·운영

* ①시·도청 44개 팀·224명, ②경찰서 253개 팀·1,375명

- (사건배당·지휘) 고소·고발·진정은 물론 첩보까지 수사과장이 전부 검토 후 전담수사팀 등 적정 수사팀에 배당하여 신속 수사지휘

- (접수보고) 악질적 추심 사건은 시·도 경찰청 등 상급관서에 사건접수 즉시 보고하고, 불법추심 관련 모든 불법행위*를 빠짐없이 인지

* △대부업법 △이자제한법 △채권추심법 △성폭력처벌법 △범죄단체조직 △스토킹처벌법 등

- (착수) 수사착수단계부터 몰수·추징보전 고려해 자금 추적

② **(피해신고 연계) 금감원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적극 수사의뢰***하고, 혐의자가 등록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지자체로 위법사항 통보

* 불사금신고센터 제보내용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경찰에 수사의뢰

: ('20) 52건 → ('21) 633건 → ('22) 377건 → ('23) 398건 → ('24.1~11) 360건

※ 주요 수사의뢰 피해사례

○ 추가 대출을 조건으로 한 고금리 급전대출 사기

- 500만원 대출이 필요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연락하였으나, 거래이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고금리 소액(20만원 대여, 45만원 상환) 거래를 수차례 요구하여 초고금리(연 6,500%) 이자(2백만원)만 편취당하고, 원하는 대출은 받지 못한 사례

○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연계

- 신용도가 낮아 1: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OO대부에 대출 문의. 잠시 후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 가족·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50만원 대출,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상환을 제 때 하지 못하자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을 지속하는 등 초고금리, 불법추심 피해 사례

○ 불사금 범죄 제보 독려를 위한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(금감원)*을 지속중이며,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 확대 추진**

* 불법금융행위 우수제보자에 대하여 매년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 개시('16.6월) → 이후 총 15회('24.11월 기준)에 걸쳐 174명에게 6억 64백만원을 포상

** ① 불사금 포상금액 상향 조정(최대 1,000만원 → 2~5배 수준)을 위한 예산 확보중

② '24년 포상식 진행시 포상제도 확대계획 홍보(12.12, 보도자료 배포)

5

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

◆ **상향된 구형 기준(24.7월) 및 「대부업법」상 벌칙 한도(상향 추진중)를 최대한 적용하여 엄벌 조치**

① **(구형기준 상향)**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형벌 조항(대부업법, 채권추심법 등) 외에 처벌수위가 높은 특수형벌 조항을 적극 적용

- 「대부업법」 및 「채권추심법」 위반 사건의 **구형 기준 상향(24.7월)**에 따라 **공판단계에서 중형을 구형하고**, 범행수법·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낮은 선고형은 적극적으로 향소

※ 「대부업법」 및 「채권추심법」 외의 다른 법률을 추가 적용한 사례

- ▶ 사무실·숙박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, 총책·중간관리자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건에 있어, 직급체계·내부규율·수익분배 구조 등 조직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·활동·가입죄로 의율하여 총책을 포함한 관련자 총 10명 기소(5명 구속, 5명 불구속) [24. 11. 창원지검]
- ▶ 연이율 3,476%의 초고금리 대부 후, 상환을 연체한 채무자의 가족, 지인들에게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착취 추심을 저지른 사건에 있어, 지속·반복적 연락 행위를 「스토킹처벌법」으로 추가 의율하여 관련자 총 5명 기소(4명 구속, 1명 불구속) [24. 5. 서울북부지검]

※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중형을 구형한 사례

- ▶ 수년간 SNS 광고 등을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,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그의 가족에게 전송하는 등 협박하여 불법 추심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여 징역 4년 선고[24. 9. 대전지검] ※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
- ▶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용돈, 기프트콘을 주겠다고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해 텔레그램으로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하고, 대출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여 징역 8년 선고 [24. 10. 인천지검] ※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

② **(벌칙 상향)**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및 최고금리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상향 추진

- * (미등록영업) 징역 5년, 벌금 5천만원 이하 → **징역 10년, 벌금 5억원 이하**
(정부·금융기관 사칭) 과태료 5천만원 이하 → **징역 5년, 벌금 2억원 이하**
(최고금리) 징역 3년, 벌금 3천만원 이하 → **징역 5년, 벌금 2억원 이하**

※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(12.3.)

IV. 향후 계획

□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사금융 쏠 단계에 걸쳐 후속조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,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 과제 발굴 노력도 지속

< 주요 추진 과제 >

추진 과제	작성 과제	담당기관 (추진일정)
1. 불법사금융 피해예방·차단		
가. 행정청의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강화		
· 금융당국-방심위 연계를 통한 불법금융광고 신속차단 활성화		금융위, 금감원, 방심위 (계속)
· 명백한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차단체계 개선 추진 * 금융당국→방통위→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		방통위 (’25)
· 사설 채무구제사이트에 대한 불법소지 확인 및 차단조치 강구		금감원, 방심위 (’24.12월~)
나. 온라인플랫폼사의 불법광고 사전차단 노력 강화		
· 온라인플랫폼사의 불법 금융광고 선제적 차단 자율규제 지속 확대		방통위, 금융위, 금감원 (계속)
· 온라인플랫폼사의 불법금융광고 게재 이용자에 대한 제재기준 약관 반영 법적 의무화 (「정보통신망법」 개정)		방통위 (’25.하반기)
·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의 사전심사 및 사후조치 의무 강화 입법필요성 검토		방통위 (계속)
다.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·감독 강화		
· 불법영업 온라인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		금감원, 지자체, 경찰청 등 (계속)
· 「대부업법」 개정을 통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상향 등 관리·감독 강화		금융위 (’25)
라.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근거 마련 추진		
· 「대부업법」 개정을 통해 ‘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이용된 번호’ 차단근거 마련		금융위 (’25)
마. 정책서민금융 공급 지속 확대		
·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점진 확대		금융위, 서금원 (계속)
· 대출 관련 검색시 ‘서민금융진흥원’이 전면 노출되는 연관 검색어 종류 확대		금감원, 방심위 (’24.12월)

2. 피해발생시 피해자보호 강화	
가.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 개선	
· 전화번호가 없는 등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 추진	법률구조공단 (24.11월)
·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처벌근거 보완 검토	법무부 (25)
나. 피해신고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강화	
· 불법추심에 대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(가해자 경고 등) 조치를 적극 안내 및 시행	경찰청 (24.11월~)
다.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따른 불법·과잉추심 방지 의무의 금융회사 내규화	
· 제도권 금융기관의 과잉추심 방지 의무 이행 내실화를 위해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	금융위 (25)

3.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확대	
· 「대부업법」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범죄이익의 철저한 박탈 추진	금융위 (25)
·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(법정 최고금리 초과이자 등) 보전조치 시행	경찰청 (계속)
· 지인·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	금감원, 법률구조공단 (계속)
· 불사금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부터 재산·체납추적까지 엄정 대응하여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·환수	국세청 (계속)
· 자활방안 등 경제적 지원, 심리치유 등 다양한 지원대책 안내	서금위, 고용부, 법무부 등 (계속)

4. 피해발생시 단속·수사 강화	
· △ 악질적 채권추심 △ 개인정보 판매행위 등 특별단속 실시	경찰청 (계속)
·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신속 대응체계 구축	경찰청 (24.11월~)
·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적극 수사의뢰 등 피해신고 연계	금감원 등 (계속)

5.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	
· 불사금 행위에 처벌수위가 높은 특수형벌 조항의 적극 적용을 지속 추진	대검찰청 (계속)
· 「대부업법」 및 「채권추심법」 위반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중형을 구형하고, 범행수법·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낮은 선고형은 적극적으로 항소	대검찰청 (계속)
· 「대부업법」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및 최고금리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상향 추진	금융위 (25)

참고 1 불법사채 솔루션업체 실태 및 대응방향 (금감원)

- **(실태)** 최근 불법 채무구제 솔루션업체가 난립하여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
 - 불법 채무구제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광고,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*하고,
 - * 특정업체의 경우 금감원 피해신고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기관 링크를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
 -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수수료, 착수금, 후원금 등을 요구하며, 조율 실패 등의 이유로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
 - **(문제점 및 대응)**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*가 있으며,
 - * 제109조(벌칙) 제1호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·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 등에 대해 법률상담,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 -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수수료 비용만 지급하여 불법사채 피해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
- ⇒ 금감원·대한변호사협회 공동으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안내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*하였음
- * 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세요 (‘24.9.3., 금감원·대한변호사협회 공동)

< 참고 :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

- ▶ **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!**
- **불법사채 솔루션업체의 수수료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발생시 경찰(☎112)에 신고하시거나 금감원(☎1332) 또는 대한변호사협회(☎02-3476-4000)에 문의**

참고 2 영국 「온라인 안전법 (Online Safety Act 2023)」 주요 내용

- 「온라인 안전법」은 플랫폼사업자에게 불법정보등에 대한 관리 의무 부과
 - (플랫폼사업자 범위) 소셜미디어 서비스, 소비자 파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공유 사이트, 비디오 공유 플랫폼, 데이트 서비스, 온라인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웹사이트, 앱 및 기타 서비스
 - * 회사가 영국 외부에 있더라도, 영국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적용
 - ▲상당한 수의 영국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▲영국이 타겟 마켓이거나 영국 사용자가 액세스 가능할 경우 ▲해당 사용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 포함
 - (불법정보등의 범위) 아동 성적 학대, 사이버 괴롭힘, 폭력·성폭력, 사기성(fraudulent) 광고, 불법 마약 등 판매, 자살 조장, 여성에 대한 폭력 또는 폭력 선동행위 등
 - (플랫폼사업자 의무) ▲불법정보등에 대한 사전(식별, 범죄 악용위험 감소, 제거 시스템 관리 등) 및 사후(피해발생시 삭제 등) 조치, ▲아동 유해 정보의 범주 설정, 위험 평가, 연령 제한 등 조치, ▲성인 관련 정보 제어, ▲자살·자해 관련 정보 제거 및 형사 처벌, ▲유해 알고리즘 처리 조치
- 동법에 의해 독립 규제기관으로 지정된 Ofcom(Office of Communication)은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제재
 - (Ofcom의 책무) Ofcom은 ▲사업자의 의무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확인, ▲인터넷 사용자 보호 조치를 모니터링, ▲불이행 사업자 제재 가능
 - (제재 수단) ▲최대 1,800만 파운드 또는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10% 중 더 큰 금액으로 벌금 부과, ▲회사와 고위관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상 책임 부과 가능
 - 결제 서비스 업체 또는 광고 서비스 업체 등에 의무 불이행 사이트와 거래를 중단한 것을 요구하여, 해당 사이트의 수익 창출이나 영국 내 접속 방지

참고 3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진행경과 (금감원)

1 소송 진행경과

-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초고금리, 악질적 불법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원천 무효를 위해 총 9건*의 무효화 소송 지원 중
* 7건 소송 진행중, 2건 추가 소송 준비중
- 이 중 30대 남성 피해자의 초고금리, 성착취 추심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, 선고 직전 피해자(원고)가 불법사채업자(피고)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

<소송 주요내용 >

- ▶ 피해자는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연 600~36,000%에 이르는 이자지급을 강요받고, 변제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가족·지인의 연락처, 나체사진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왔으며, 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기지급한 원리금 및 불법추심행위 관련 위자료 등 총 3,75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

- 변론 과정에서 원고 측은 불법대부 피해 및 반사회적 계약에 따른 무효 주장을 강력하게 펼친 반면 피고 측은 이에 대한 반론 등이 없어,
- 원고 측의 합의금 전제 소취하 요구 등에 따라 원고 측이 소취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

2 평가

- 피해자의 소취하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 판례가 형성되지는 못했으나,
- 불법대부 무효화 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피해구제가 일부 이루어지는 점 등이 의미가 있음

3 향후 계획

-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진행중인 나머지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·대응해 나갈 예정이며,
- 검·경과도 지속 협력하여 추가 피해사례 파악 및 무효화 소송을 계속 지원·확대해 나갈 계획

참고 4 불법사금융업자 주요 검거사례 (경찰청)

□ 신용정보 유통

- ①대부카페(국내 최대규모)를 운영하며 수집한 채무자 DB를 다른 대부업자에게 판매한 조직, ②매입한 DB를 대부업자들에게 재유통하면서 미등록 대부 영업한 조직 검거

- ▶ (①정보매매) 국내 최대규모(회원 13만 명) 대부카페를 운영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업자 90명에게 제공하여 약 5억 원을 대부 중개한 조직 39명 검거(구속1)
- ▶ (②정보유통) ①에서 매입한 채무자DB를 전국 대부업자에게 재유통하여 226억 원을 대부중개하고, 직접 3,831명에게 58억 원을 대부한 조직 24명 검거(구속2)

□ 수수료 수취

- 제도권 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희망자를 모집, 대출의뢰자의 대출 자격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, 대출금의 20~50% 상당 수수료를 수취한 대부중개 조직 등 검거

- ▶ (중개수수료 수취) '24. 2. ~ '24. 9. 불법대부중개조직을 결성해 무직자·대학생 등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 희망자 600여 명을 모집하고, 이들이 대출 자격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토록하여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받게 한 후, 수수료 명목으로 30%인 9억 원을 수취한 총책 등 33명 검거
- ▶ (중개수수료 수취) '23. 2. ~ '24. 8. 전국 6곳에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 5,000여 명에게 금융기관 상대 약 160억 원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%인 33억 원 상당 수수료를 수취한 대부업자 48명 검거
※ 서류를 조작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대출신청인 83명도 사기혐의 적용·검거
- ▶ (대출금으로 중고차 구입) '19. 9. ~ '22. 9.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"중고차를 구매하면 신용도가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"라고 속여 캐피탈 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금으로 시세의 5~10배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해 피해자 425명에게 125억 원을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등 211명 검거(구속20)

□ 고금리 대부

- 법정이자율 연 20%를 초과하여 연이율 2,000~6,000%에 달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미등록 대부업 조직 검거

- ▶ (고금리 대부) 불법 대부업체를 조직, 피해자 1,967명에게 24억 원을 미등록 대부하고 연이율 4,500%*로 16억 원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조직, 총책 등 15명 검거
* 80만 원 대출 10주 뒤, 150만 원 상황
- ▶ (고금리 대부) 총책·콜팀·상담팀으로 구성된 범죄집단 조직, 피해자 730명에게 연이율 2,250%*로 22억 원을 미등록 대부한 조직, 총책 등 16명 검거
* 250만 원 대출 5일 뒤, 320만 원 상황